## 울산지방법원

### 판 결

사건 2023고단353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석재(기소), 연선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희(국선)

판결선고 2023.1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부터 2022. 11.경까지 양산시 B 소재 피해자인 'C' 내 IT 매장에서 피해자소유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경 위 매장에서, 업무상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갤럭시 S21 울트라 4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인터넷 D을 통해 불특정인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휴대폰 총 111대 시가 합계 154,118,6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든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C 양산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들을 횡령하였는바, 일응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모두 지급된 점[F 직원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G 보험금 8,000만원 + 피고인이 F에 납입한 4,000만원 + 피고인의 2022. 10. 11. 급여 370만원 + 피고인의퇴직금 4,970,172원 + F 납부금액 22,305,928원], 이후 피고인이 F가 대신 납부한 금액을 변제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온 점, G 지급 보험금 8,000만원의 경우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부담하게되는점, 피고인이 반성하고있는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성행,범행의수단및결과,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양형조건을종합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판사 한윤옥

별 지

#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피해품	횡령방법	처분방법
1	2021, 9.경	S21 울트라 (4대)	매장 내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	D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
2	2021, 11.경	Z폴드 3 (2대)	"	n
3	2021. 12.경	Z폴드 3 (4대)	"	"
4	2022. 1경	Z폴드 3 (4대) Z플립 3 (14대)	n	n
5	2022. 2.경	Z폴드 3 (2대) Z폴립 3 (14대)	"	"
6	2022. 3.경	S22 울트라 (7대) S22 플러스 (5대) S22 (5대)	И	И
7	2022. 4.경	S22 울트라 (7대) S22 플러스 (5대) S22 (5대)	W.	μ
8	2022. 5.경	S22 울트라 (7대)	"	"
9	2022. 6.경	S22 플러스 (5대) S22 (2대)	n	"
10	2022. 8.경	S22 (3대)	II .	"
11	2022. 9.경	Z폴드 4 (4대) Z폴드 4 512 (2대) Z플립 4 (5대)	η	y
12	2022. 10.경	Z플립 4 (5대)	"	"
총합		Z플립 4 (10대) Z플드 4 (4대) Z플드 4 512 (2대) Z플립 3 (28대) S22 (15대) S22 울트라 (21대) S22 플러스 (15대) Z폴드 3 (12대) S21 울트라 (4대)	111대 154,118,600 원	